

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

2019. 4.



I. 총 칙

1. 목 적

- “청년 맞춤형 지원사업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목적, 참여 주체별 역할,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- 본 사업 추진 시, 관리·운영에 대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고,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해석을 따름.

2. 용어 정의

- 「청년 맞춤형 지원사업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“개인 맞춤형 프로그램”을 설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.
- 「지역센터」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함은 재단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에 설치한 조직과 공간을 말함.
- 「운영위원단」이라 함은 청년 모집, 선정,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내용 심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·결정기구를 말함.
- 「추천기관」이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발굴·추천하는 기관을 말함.
- 「참여청년」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말함.
- 「지역청년」이라 함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말함.

3.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

가. 재단

- 사업 세부운영지침 제정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
- 지역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, 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·선정, 평가, 계약 등
- 지역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
- 지역센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
- 운영위원단 구성 및 운영
- 추천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협약
- 사업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북 제작, 배포 및 교육
- 슈퍼비전 및 케이스 스터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청년 삶의 질 향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외부 기관 계약 및 집행
- 센터-청년 간 분쟁 조정 등
- 사업비 집행 제반 서류 관리 및 사업비 지급, 회계정산

나. 지역센터

- 청년 발굴, 선발, 심층상담 및 지속 관리
-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, 운영, 관리
- 사업비 지급요청 및 프로그램비 집행
- 센터 설치 및 관리
- 지역 네트워크 구축
- 사업 수행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
- 지역청년 대상 청년 정책 안내 및 연계
- 기타 재단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

다. 운영위원단

- 지역센터 선정 공모 심사 및 선정

※ 운영위원이 소속되거나 관련된 기관에서 사업신청을 한 경우, 심사위원에서 제외함.

- 지역별 사업 지원내용 검토 및 외부 자원연계
- 애로사항 해소 관련 지원심사
-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사
- 지역센터 운영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
- 사업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해소방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II.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개요

1. 추진배경

- 현재 정부 등에서 162개의 청년 취·창업 지원 사업을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, 청년들은 심층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검색하거나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

▶ 현재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“온라인 청년센터”에 게시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은 162개이며, 온라인으로 실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, 심층적인 상담은 어려운 실정

-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심리상담, 식생활·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,
 - 정부 등에서는 취·창업과 관련된 직접 사업위주로 지원하여
 - 민간재단차원에서 이들 항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

▶ 청년재단에서 발표(2017.8.10.)한 “청년 삶의 질(YLI) 실태조사” 결과 취업준비생 중 ① 습기가 차는 주거지에 거주자(51.2%), ②만족한 식생활을 하진 못한 경우(30.3%), ③ 혼밥 혼술을 선호(68%), ④ 아픈곳이 있지만 진단을 미룬 경험(51.1%), ⑤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(73.1%), ⑥ 현재 자신이 건강하지 않음(30.5%), ⑦ 최근 1월이내 극도의 우울증 경험(45.4%) ⑧ 평균대출액 691만원, ⑨ 대출상환 부담(92.3%), ⑩ 결혼의향 없음(51%), ⑪삶에 대한 만족도(46점)

▶ “청년 삶의 질(YLI) 실태조사” 결과 재단 추진사업 제언

- ① 청년집단상담지원, ②청년 도시락 모바일쿠폰 지원사업, ③ 청년 심리치유상담지원, ④ 청년 법률 고민 지원제도, ⑤ 현직자 라이프 멘토링 사업, ⑥ 청년 종합검진비용 지원, ⑦ 통신사 청년요금제 지원제도, ⑧ 웨딩공간 지원사업, ⑨ 싱글맘, 싱글대디 육아지원사업

2. 사업개요

-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-34세 이하
취약계층 청년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발굴하여 심층상담을
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 진입 지원
- (사업기간) 2019.6.~2021.12.
 - 1차연도 : 2019. 6 - 2019. 12. (7개월)
 - 2차연도 : 2020. 1 - 2020. 12. (12개월)
 - 3차연도 : 2021. 1 - 2021. 12. (12개월)
- (지원대상) 만 19-34세 이하 청년으로,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가구구성원 중 미취업 청년 (신청일기준)
- (1차연도 지원인원) 390명 (30명*13개센터)
 - 1차연도 참여청년의 지원기간은 2019. 6- 2020. 5월로 함.
 - 2, 3차연도 시작 시, 센터별로 신규 참여청년 30명 모집

○ (수행기관) 13개센터

- 2개센터(서울,울산)는 재단 직접운영
- 11개 지역센터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설치예정

※ 설치 지역은 상황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변경 될 수 있음.

○ (추진절차) ① 각 센터별 청년공간 마련 → ②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참여대상 청년 신청·접수 → ③ 심층상담 후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→ ④ 사회진입 및 안착 지원

○ (사업내용) 각 센터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없는 경우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배치 및 청년공간을 마련하고,

-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·훈련 등은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하고, 정부 등에서 지원되지 않은 자비 부담금, 심리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용 등은 재단에서 지원

*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취·창업 지원 사업을 요약 정리하여 각 센터에 배포

- 청년들의 건강·채무·법률고민·식생활 등 “청년의 삶의질 향상” 항목을 중점 지원하여 사각지대사업을 해소

사업명	내 용
① 청년공간 설치 운영	○ 직원 2~3명이 근무하고,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(본 사업 수행만을 위한 별도공간)마련
② 청년 모집 및 선발	○ 직접신청 또는 기관추천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
③ 심층상담	○ (심층상담 및 프로그램 설계) 개인별 진로 및 일자리 욕구 파악, 진로 탐색 및 설정을 위한 진단 등을 실시한 후,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
④ 취·창업 지원	○ (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) 심리상담 및 자소서·면접컨설팅, 모의면접 등은 각 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하되, 자체 내 인력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
	○ (재단프로그램 참여지원) 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
	○ (취·창업 및 교육·훈련지원) 정부의 취업지원(온라인 청년센터) 및 창업지원(k-스타트업) 제도 등을 안내하고, 훈련이 필요한 경우 “내일배움카드” 등을 통한 훈련·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(자비부담 비용 등은 각 센터에서 지원) * 원거리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·숙박비·식비 및 자격증 시험응시료 지원 *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, 시제품 개발비용 등으로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센터에서 판단하여 지원
	○ (현직자 멘토링 지원) 청년들이 현직자에게 구체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⑤ 삶의질 향상 지원	○ (식사 지원)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질 좋은 식사가 어려운 경우 식사 쿠폰 등을 지원(1일 1식 8천원이하)
	○ (법률 고민지원) 지역별로 “청년문제 전문 변호사”를 선임하여 채무·형사·가족관계 등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	○ (종합검진비용 지원) 지역별 건강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(1인당 30만원 이내)
	○ (애로사항 해소지원) 생계비, 가족부양, 주거, 질병, 학자금 대출금 상환 등 청년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2회이상 심층상담을 거쳐 해소비용 지원
⑥ 사회진입 및 안착지원	○ (사회진입 지원) 일자리 및 취·창업 정보 제공 및 연계
	○ (면접비용지원)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수료 후 면접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, 교통비, 숙박비 등 지원
	○ (사후관리) 상담 및 훈련 종료 후에도 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, 필요시 재단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연계

Ⅲ. 세부 운영방안

1 지역센터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
1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대상 기관

-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, 재단법인
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공익법인
-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
-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

※(세금)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나.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

- 해당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서류를 청년재단에 제출
 - ① 사업신청서(서식 1)
 - ②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(서식 2)
 -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(서식 3)
 -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- ⑤ 법인 설립허가증, 법인등기부등본(등기말소사항이력전체)
 - ⑥ 사대보험 완납증명서
 - ⑦ 수행실적 증명서
 - ⑧ 법인소개서, 정관
 - ⑨ 전년도 결산자료
 - ⑩ 사무소 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등)
 - ⑪ 신청일 현재 센터 설치장소가 확보되었거나 또는 계획중인 경우 공간현황, 장소, 면적 및 청년들의 접근성 등 관련 자료 제출

☞ **사업신청서·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 총 10부 제출(전자파일 별도 제출)**

- 다만,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
- 신청기관 정관 고유목적 사업에 본 사업이 해당되지 않은 기관
 -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
 -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
 -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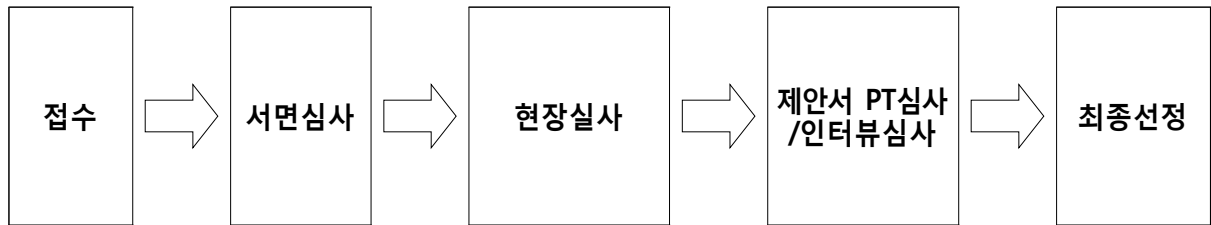
2. 선정심사

가. 선정심사 기준

<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센터 심사기준>

항목	세부내용
기관 인프라 (20)	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? ○ 본 사업을 운영하기에 안정적인 조직 형태 및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? ○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?
기관 전문성 (20)	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? ○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? ○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,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?
사업 수행 능력 (30)	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? ○ 제안요청 내용 및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법 등이 제시되었는가? ○ 대상자 모집, 발굴,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?
운영 관리 방안 (30)	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? ○ 사업 운영 일정과 사업운영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? ○ 재단과 제안한 센터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있는가?

나. 선정심사 절차 및 방법



①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

- 접수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(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② 서면심사, PT/인터뷰 심사, 현장실사, 제안서PT심사

- 서면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인 경우에는, 현장실사 대상 제외
- 신청서류에 센터설치 공간을 제출한 경우 재단에서는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, 공간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 전일까지 제출
- 운영위원단에서 사업수행계획서, 실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심사
- 신청일 현재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센터 설치공간을 마련한 경우 우대

③ 최종선정

- 운영위원단에서 심사를 통해 전국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, 서울, 울산 지역 외 11개 기관을 선정

※ 2개센터(서울,울산)는 재단 직접운영

※ 11개 지역센터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설치예정

3. 계약 체결

- 재단과 기관은 재단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계약 체결

2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관리

<중점 추진방향>

- ◆ 선정된 청년에게는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(심리상담, 교육·훈련, 자소서 및 면접컨설팅 등) 지원
 - ⇒ 교육·훈련 참여 시 소요되는 자비부담액,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·숙박비, 자격증 발급비용 등 실비 지원
- ◆ “청년의 삶의 질 향상”을 위한 다양한 항목(종합검진비용, 법률상담, 식사, 애로사항 해소)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
 - ⇒ 종합검진비용(CT 및 초음파검사 포함), 채무·형사 등 법률상담비용, 1일 1식 식사
 - ⇒ 그 외에 상담과정을 거쳐 생계비·가족부양·질병, 학자금대출 등의 사유로 취·창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애로사항 해소비용 지원

1. 주요 사업내용

가. 사업기간 : 2019.6~2021.12

- 1차연도 : 2019. 6 - 2019. 12. (7개월)
- 2차연도 : 2020. 1 - 2020. 12. (12개월)
- 3차연도 : 2021. 1 - 2021. 12. (12개월)

※ 연차별 사업 평가에 따라 위탁계약 연장여부 및 위탁사업비 조정결정

나.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

- 명칭 : 청년재단 00(지역명)센터(가칭)
- 면적 : 30평이내

※ 30평 미만의 공간이 없고, 30평을 다소 초과하는 공간만 있을 경우 재단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

- 공간구성 : 사무실, 상담실, 청년공간

※ 각 센터에서 입주 공간이 마련되면, 배치도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견적서 등을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

다. 지역센터 사업전담인력 운용

- 인원 : 2-3명 (예산 범위 내에서 각 센터에서 인원 결정)
- 사업운영행정, 청년대면상담,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지원, 사업 예산관리 등을 담당함.
- 자격요건
 - 직업상담사, 사회복지사 등 상담 및 복지관련 자격소지자
 - 관련 근무경력 3년이상 보유자
- ※ 배치된 인력은 각 센터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
- ※ 배치된 인력은 본 사업 전담 인력으로, 기관 내 타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지역청년 방문 시 재단 및 정부사업 안내 상담 등 기초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.

라. 지원대상

-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~34세 이하,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구성원인 미취업청년
- 참여제외대상
 - 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(주 15시간 미만자 제외)
 - ②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취·창업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
 - ③ 실업급여 수급자
 - ④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

마.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

- 절차 : ①청년 직접신청·기관추천 → ②(신청자) 인터뷰 → ③심사 → ④선발

절차	상세내용
신청·추천	-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 - 입력항목 : 청년개인정보, 학력, 경력, 자격사항, 구직활동 현황, 목표, 지원동기, 목표, 향후계획 - 제출서류 : 소득분위 확인서류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* 추천기관을 통해 발굴·추천된 청년의 경우, 추천기관 정보 및 기관코드 입력 * 추천기관은 고용센터, 직업계고, 사회복지관, 지역아동센터 등
(개인신청자) 사전인터뷰	- 각 지역센터에서 해당지역 청년에 대한 사전인터뷰 실시 * 정부 사업 참여 이력만 현황 파악
심사	- 청년 신청내용, 사전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* 30명 초과시,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경우,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우선선발 * 센터직원과 직계 존비속 및 친인척 관계일 경우, 참여불가

바. 청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

○ 심층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

- 개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심층상담 실시
- 붙임 서식6에 의거 상담일지를 작성하고, 취·창업지원 및 삶의 질 향상지원 항목 등을 기재
- 프로그램 설계 및 향후 지원계획 수립
- 선정된 청년에게 프로그램 검토 및 승인

사. 청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

○ 취·창업지원

지원항목	상세내용
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	- 심리상담 및 자소서·면접컨설팅, 모의면접 등은 각 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 - 자체 내 인력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
재단 프로그램 참여지원	- 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
맞춤형 취창업지원	- 정부사업 우선 참여를 독려하고,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비 부담금 등 지원 -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* ‘정부사업 가이드북’ 제작·배포 및 직원교육 실시 * 타지역에서 교육 훈련시,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지원 * 훈련 후, 필요시 자격증 발급비용 실비 지급
현직자 멘토링	- 청년들에게 현직자멘토링이 필요한 경우 ‘코멘토’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토록하고 자비부담금은 재단에서 지원 * 코멘토는 기업에 재직중인 8,500여명의 현직자 멘토를 보유하고 있으며, 취업과정에서 취업, 직무, 회사 관련 상담, 자소서 및 면접 관련 질문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임

○ 삶의 질 향상 지원

지원항목	상세내용
식사지원	- 식사지원이 필요한 경우, 1일 1식 8,000원 이내로 지급
법률고민 지원	- 지역별로 “청년문제 전문 변호사”를 선임하여 채무·형사·가족관계 등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지원 * 대한법률구조공단 - 홈페이지 통한 사전 예약 후 무료 방문상담 가능
종합건강 검진비용 지원	- 건강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* 재단에서 건강검진기관과 계약 체결하고, 비용도 일괄 집행. (지원대상 청년 정보를 건강검진기관에 송부하고 당사자 여부 확인 후 검진 실시)
애로사항 해소지원	- 생계비, 가족부양, 주거, 질병, 학자금대출금상환 등의 사유로 취·창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2회이상 상담을 진행하고, 지원대상 여부 결정 * 애로사항 해소지원 대상 청년을 각 센터에서 재단으로 신청하면, 재단 운영위원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(월1회 통합심사)

○ 사회진입 및 안착지원

지원항목	상세내용
사회진입 지원	- 일자리 및 취·창업 정보 제공 및 연계
면접비용 지원	-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수료 후 면접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, 교통비, 숙박비 등 지원 * 면접확인서류 제출 후 실비지원
사후관리	- 상담 및 훈련 종료 후에도 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,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해소지원 *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 등에 참여 안내

2. 지역센터 운영관리 및 평가

가. 지역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현황 관리

-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계획 제출(재단)
-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현황 모니터링 실시(수시)

나. 지역센터 점검 및 평가

- 추진 실적에 대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

구 분	내 용
중간점검	-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센터 운영현황 중간보고
	- 운영지침 준수여부 점검
최종평가	-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결과 제출
	- 운영지침 준수여부 확인 및 성과평가 (평가기준 의거)
	-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사업비 정산 실시

3 사업비 편성

1. 사업비 편성

-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항목-세항목 내에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,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
- 지역센터 운영기관 선정 심사 시,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판단될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.
- 2019년 위탁사업비 총액은 1개 센터당 163,000,000원으로, 인건비, 직접사업비, 간접사업비로 항목 편성
- 사업항목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

항목	세항목	편성기준		금액기준	
인건비	인건비	○ 지역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, 4대 보험료 및 퇴직금		55,000,000원 이내	
간접 사업비	여비	○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			
	사업 운영비	○ 공공요금, 우편요금, 사업 홍보물 제작 등			
직접 사업비	운영비	○ 지역 전문가 회의 등 지역센터 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(내부 인력 지급 불가) ○ 회의, 간담회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(음료, 식대 등)		지역실정을 반영 편성	
	임차비	○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, 기자재 임차료			
	프로그 램비	○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		500,000	108,000,000원 이내 (1인 360만원)
		○ 취창업 및 교육지원비		1,000,000	
		○ 교육·훈련여비		900,000	
○ 식사지원비		1,200,000			

- 프로그램비는 개인별 지원금액(1인 3,600,000원)내에서 지급하되,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지급
- 법률지원, 종합검진지원, 채무지원, 애로사항해소 지원금액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
- 임차비는 기관 선정 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합의